

의안 번호	2210	[종갓집 공공실버주택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] 심사보고서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: 2023. 12. 6.(수)
- 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: 2023. 12. 6.(수)
- 위원회 심사일자: 2023. 12. 18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(복지환경국장 임미영)

가. 제안이유

-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실버주택을 위탁·운영코자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종갓집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업무 위탁
- 위탁사무 내용 : 공공실버주택(2개동 80호) 시설 운영 전반
- 수탁자 선정방법 : 공개모집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·결정
- 위탁기간 : 5년간

다. 근거법규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홍정식)

-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공실버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
- 전문기관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을 정의하는 것인지

설명이 필요하고, 수탁자 결정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